제359회 임시회
2017. 10. 24.(화)

심 사 보 고 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6

2017. 10. 24. (화)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2017년 10월 12일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마. 주요내용

○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배훈)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 중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다고 사료됨.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4. 토 론 요 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69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10월 24일 (제 359 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96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고,

○ 일부 조례는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어,

○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조례 중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명칭 인용 조례를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일괄개정(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재난관리 주관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같은 조 제8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7조(「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정부조직법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참 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

2017. 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 치 법 규 과

Ⅰ. 추진배경

1. 정비목적

○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

연번	부처명칭 변경	연혁부처 인용조례(건)
1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4644건
2	■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343건
3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3건
4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834건

○ 내무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 있어

- 주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음

연번	부처명칭 변경	변경시기	정비조례(건)
1	■ 내무부 → (現)행정안전부	1998년	95건
2	■ 안전행정부 → (現)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2015년	1172건
3	■ 지식경제부 → (現)산업통상자원부 등	2013년	145건
4	■ 철도청 → (現)코레일	2005년	21건
5	■ 국토해양부 → (現)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2013년	217건

※ 재무부(21건), 총무처(9건), 보건사회부(9건), 재정경제부(51건), 식품의약품안전청(65건) 등 총 2,610건의 자치법규에서 연혁부처 명칭이 인용됨

2. 정비방안

○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시 **일괄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해 왔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 일괄개정 사례** : ①**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②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Ⅱ. 일괄개정 방식

1. 의의

○ **(개념)**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법임

○ **(편의성)** 자치법규의 의결 또는 공포 시 한 건으로 처리하고, 공포 번호는 하나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 관련 조례의 부분만을 편집 가제하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조례집에 별개의 조례로 수록할 필요도 없음

2. 지원방안

○ **(일괄개정)**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방식을 지원

<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방안 >

□□도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A조례」의 개정) A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B조례」의 개정) B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C조례」의 개정) C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비사례)**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처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주요 일괄정비 사례 >

연번	자치단체	일괄정비조례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2010.3.19.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2010.11.25.
		■경기도 규칙 중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2012.11.5.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2011.3.15.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2012.12.28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2013.8.5.
2	강원도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2013.10.4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3.7.26.
3	대전광역시 동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5.3.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5.3.2.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0.1.1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0.1.11.

* 상게된 사례 외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처명칭 일괄정비에 착수한 바 있음

○ **(정비대상)** 정부조직법 연혁사항을 조사하여 중앙부처의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연혁기관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 연혁부처 43개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총 **8554건**에 대해 정비 필요

○ **(정비방안)** 인용된 연혁부처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따라 현재 부처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 일괄적으로 부처명칭에 대한 표준안 제공을 지양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

* **사례** : '**국토해양부**'를 인용한 경우, 국토·건설·교통 기능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해양기능은 '**해양수산부**'가 인용하고 있음